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에 주요국 관련 외교전략 조정 및 긴급 외교현안 대응을 위한 인력 3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외교원의 전임교수요원을 특정직공무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립외교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인 일반직공무원 정원 21명(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21명)을 특정직공무원 정원 21명(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2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7.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정원 3명의 구체 직렬을 본부정원표에, 일반직에서 특정직으로 직종이 변경된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21명을 국립외교원 정원표에 반영하고, 외교전략기획관을 개방형직위에서 해제하고 전략조정담당관을 추가하며, 아세안국·중남미국·공공문화외교국 및 기후환경과학외교국 하부 조직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그에 따라 일부 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 2에 근거하여 퇴직예정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을 다른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으로 전환하고, 공업직렬 2명을 공업·시설직렬 2명으로 복수직렬로 조정하며, 본부와 국립외교원간 일반직 정원 1명을 재배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7. ~ 7.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세분석담당관”을 “전략조정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주요국 관련 외교전략의 조정

8. 주요국 관련 긴급 외교현안 대응 및 동향·정보 분석

제16조의2제5항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메콩 지역과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3. 한-메콩 협력기금 사업 심의·조정

제16조의2제6항제1호 중 “(ASEAN)과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ASEAN) 및 ASEAN 관련 협의체인 한-ASEAN, ASEAN+3(한·일·중),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2. 제1호에 규정된 각 협의체와의 협력 및 관련 정세에 대한 조사·연구

3. 한-아세안 센터,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등 아세안 관련 국제

기구 및 아세안문화원과의 협력

4. 한-아세안 협력기금 사업 심의·조정

제18조제4항제4호 중 “남미국가연합, 남미공동시장, 안데스공동체”를 “남미공동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가이아나·과테말라·그레나다·니카라과·도미니카공화국·도미니카연방·멕시코·바베이도스·바하마·베네수엘라·벨리즈·세인트루시아·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세인트키츠네비스·수리남·아이티·앤티가바부다·엘살바도르·온두라스·자메이카·코스타리카·콜롬비아·쿠바·트리니다드토바고·파나마”를 “과테말라·그레나다·니카라과·도미니카공화국·도미니카연방·멕시코·바베이도스·바하마·벨리즈·세인트루시아·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세인트키츠네비스·아이티·앤티가바부다·엘살바도르·온두라스·자메이카·코스타리카·콜롬비아·트리니다드토바고·파나마”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2호) 중 “중남미 자원·인프라·신산업”을 “라틴아메리카”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가이아나·베네수엘라·수리남·쿠바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3. 제2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연구 및 협력방안 연구·시행

6. 미주개발은행, 중남미개발은행, 유엔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 등 지역경제기구 및 태평양동맹, 안데스공동체 등 지역경제협력체와의 협력방안 연구 및 시행

7.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과의 협력방안 수립·시행 및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 사이버사무국의 운영

제24조제2항 중 “공공외교총괄과·유네스코과·문화교류협력과·정책공공외교과·지역공공외교과”를 “공공외교총괄과·유네스코과·문화교류협력과·정책공공외교1과·정책공공외교2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네스코과장·문화교류협력과장·정책공공외교과장 및 지역공공외교과장”을 “유네스코과장·문화교류협력과장·정책공공외교1과장 및 정책공공외교2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문화·지식”을 “문화”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3호의 2,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지식 분야 공공외교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3. 국외한국학 및 한국어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14. 국외 문화재 환수·활용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

제2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공공외교과장”을 “정책공공외교1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한다)의 연간 및 중장기 정책 수립 및”을 “한다) 콘텐츠 발굴 및 관련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5호) 및 제4호(종전의 제6호) 중 “아시아·아프리카중동·중남미”를 각각 “미주·유럽·러시아”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디지털 공공외교 이행 및 관련업무 총괄·조정
5. 정책공공외교 사업 관련 재외공관 지원, 관리 및 평가
6. 주한 외국인 대상 공공외교 사업 발굴 및 시행
7. 국민외교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국민외교센터 운영 등 국민외교 기반 구축에 관한 업무

제2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공공외교과장”을 “정책공공외교2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및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북미·유럽”을 각각 “아시아·아프리카중동”으로 한다.

1. 정책공공외교의 연간 및 중장기 정책 수립 및 총괄·조정
2. 정책공공외교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업무협조 및 조정
3. 정책공공외교 수행을 위한 연구·조사 및 전문가와의 협력
4. 정책공공외교 수행을 위한 정책공공외교 콘텐츠 개발 및 지원

제28조제2항 중 “국제에너지안보과·기후녹색협력과 및 글로벌환경과

학과”를 “에너지과학외교과 · 기후변화외교과 및 녹색환경외교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제에너지안보과장 및 글로벌환경과학과장”을 “에너지과학외교과장 및 녹색환경외교과장”으로, “기후녹색협력과장”을 “기후변화외교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에너지안보과장”을 “에너지과학외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과학기술 · 우주 및 정보통신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외교정책
의 수립 · 시행 및 종합 · 조정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후녹색협력과장”을 “기후변화외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글로벌환경과학과장”을 “녹색환경외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5호(중전의 제14호) 중 “제13호”를 “제14호”로 한다.

14. 녹색경제 · 지속가능발전 관련 양자협력 업무

제37조제1항 중 “외교전략기획관, 감사관”을 “감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글로벌환경과학과장”을 “녹색환경외교과장, 전략조정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2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교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958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954
정무직 계	3
장관	1
차관	2
별정직 계	5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비서(6급 상당)	1
비서(9급 상당)	3
일반직 계	236
임기제 서기관(비상안전담당관)	1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5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	3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5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18
사서사무관	7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3등급·4등급 영사직 공무원	6
사서주사	6
시설주사 또는 공업주사	1
행정주사보	4

사서주사보	8
전산주사보	2
행정주사보 · 시설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3등급 · 4등급 영사직공무원	5
사서주사보 ·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4
행정서기	30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9
공업서기 또는 행정서기	1
임업서기	1
행정서기보	22
행정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6
운전서기보	21
위생서기보	2
조리서기보	1
전기운영서기보	1
기계운영서기보	1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
농업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51
전문경력관 가군(비상안전담당)	1
외무공무원 계	710
14등급 외무공무원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4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1
9등급 외무공무원	9
9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부이사관 · 서기관	2

8등급 외무공무원	67
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기술서기관	5
7등급 외무공무원	20
7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	1
7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기술서기관	1
7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별정직 비서(4급 상당)	1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110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서기관·행정사무관	19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165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13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사서사무관	2
5등급·6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서기관·행정사무관	27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19
5등급·6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전산사무관	2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11
3등급 또는 4등급 영사직공무원	125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행정주사·운전주사	13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시설주사·공업주사	2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행정주사보	14
3등급·4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영사직 공무원	20
3등급·4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전산주사	8
3등급·4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전산주사보	8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4
일반직 계	3

사서주사보	1
행정서기보	2
외무공무원 계	1
3등급 · 4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전산주사보	1

외교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965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961
정무직 계	3
장관	1
차관	2
별정직 계	5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비서(6급 상당)	1
비서(9급 상당)	3
일반직 계	237
임기제 서기관(비상안전담당관)	1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5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	3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5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18
사서사무관	7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3등급·4등급 영사직 공무원	7
사서주사	6
시설주사 또는 공업주사	1
행정주사보	4

사서주사보	8
전산주사보	2
행정주사보 · 시설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3등급 · 4등급 영사직공무원	5
사서주사보 ·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4
행정서기	30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9
공업서기 또는 행정서기	1
임업서기	1
행정서기보	22
행정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6
운전서기보	21
위생서기보	2
조리서기보	1
전기운영서기보	1
기계운영서기보	1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
농업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51
전문경력관 가군(비상안전담당)	1
외무공무원 계	716
14등급 외무공무원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4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1
9등급 외무공무원	9

9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부이사관·서기관	2
8등급 외무공무원	67
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기술서기관	5
7등급 외무공무원	20
7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	1
7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기술서기관	1
7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별정직 비서(4급 상당)	1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110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서기관·행정사무관	19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165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13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사서사무관	2
5등급·6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서기관·행정사무관	27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19
5등급·6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전산사무관	2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12
3등급 또는 4등급 영사직공무원	127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행정주사·운전주사	13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시설주사·공업주사	2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행정주사보	14
3등급·4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20
3등급·4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전산주사	8
3등급·4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전산주사보	11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4

일반직 계	3
사서주사보	1
행정서기보	2
외무공무원 계	1
3등급 · 4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전산주사보	1

국립외교원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총 계	106
정무직 계	1
원장(차관급)	1
별정직 계	1
비서(9급 상당)	1
일반직 계	44
서기관	1
사서사무관	1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사서주사	2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행정주사보	4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
행정서기	6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
행정서기보	3
운전서기보	5
위생서기보	1
방호서기보	8
전문경력관 나군(연구담당)	8
외무공무원 계	3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7
8등급 외무공무원	3
7등급 외무공무원	4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17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행정주사보	8
전임교수요원 계	21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21

국립외교원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107
정무직 계	1
원장(차관급)	1
별정직 계	1
비서(9급 상당)	1
일반직 계	44
서기관	1
사서사무관	1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사서주사	2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행정주사보	4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
행정서기	6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
행정서기보	3
운전서기보	5
위생서기보	1
방호서기보	8
전문경력관 나군(연구담당)	8
외무공무원 계	40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7

8등급 외무공무원	3
7등급 외무공무원	4
5등급 · 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17
3등급 · 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행정주사보	9
전임교수요원 계	21
교수 · 부교수 또는 조교수	2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외교전략기획관) ① ~ ④ (생 략) ⑤ <u>정세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외교전략기획관을 보좌한다.</u> 1. ~ 6. (생 략) <u><신 설></u> <u><신 설></u>	제9조의2(외교전략기획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전략조정담당관</u> ----- ----- -----. 1. ~ 6. (현행과 같음) 7. <u>주요국 관련 외교전략의 조정</u> 8. <u>주요국 관련 긴급 외교현안 대응 및 동향·정보 분석</u>
제16조의2(아세안국) ① ~ ④ (생 략) ⑤ <u>동남아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생 략) <u><신 설></u> <u><신 설></u> 2. · 3. (생 략) ⑥ <u>아세안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제16조의2(아세안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현행과 같음) 2. <u>메콩 지역과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u> 3. <u>한-메콩 협력기금 사업 심의·조정</u> 4. · 5.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⑥ ----- -----.

1. <u>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u> 2. <u>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u> 3. <u>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경제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경제 관련 협의체 운영은 제외한다)</u> 4. <u>아시아협력대화(ACD)와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u> 5. <u>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관한 외교업무</u> 제18조(중남미국) ① ~ ③ (생략) ④ 남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u>남미국가연합, 남미공동시장, 안데스공동체 등 남미지역 기구와의 협력방안 연구 및 시</u>	1. -----(<u>ASEAN</u>) 및 <u>ASEAN</u> 관련 협의체인 <u>한-ASEAN, ASEAN+3(한·일·중),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u> ----- 2. 제1호에 규정된 각 협의체와의 협력 및 관련 정세에 대한 <u>조사·연구</u> 3. <u>한-아세안 센터,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등 아세안 관련 국제기구 및 아세안문화원과의 협력</u> 4. <u>한-아세안 협력기금 사업 심의·조정</u> <u><삭 제></u> 제18조(중남미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3. (현행과 같음) 4. <u>남미공동시장</u> ----- ----- -----
---	---

행

5. · 6. (생략)

⑤ 중미카리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이아나 · 과테말라 · 그레나다 · 니카라과 · 도미니카공화국 · 도미니카연방 · 멕시코 · 바베이도스 · 바하마 · 베네수엘라 · 벨리즈 · 세인트루시아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세인트키츠네비스 · 수리남 · 아이티 · 앤티가바부다 · 엘살바도르 · 온두라스 · 자메이카 · 코스타리카 · 콜롬비아 · 쿠바 · 트리니다드토바고 · 파나마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 · 시행 및 총괄 · 조정

2. ~ 5. (생략)

⑥ 중남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신설>

<신설>

--

5. · 6. (현행과 같음)

⑤ -----
-----.

1. 과테말라 · 그레나다 · 니카라과 · 도미니카공화국 · 도미니카연방 · 멕시코 · 바베이도스 · 바하마 · 벨리즈 · 세인트루시아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세인트키츠네비스 · 아이티 · 앤티가바부다 · 엘살바도르 · 온두라스 · 자메이카 · 코스타리카 · 콜롬비아 · 트리니다드토바고 · 파나마 -----

2. ~ 5. (현행과 같음)

⑥ -----
-----.

1. (현행과 같음)

2. 가이아나 · 베네수엘라 · 수리남 · 쿠바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 · 시행 및 총괄 · 조정

3. 제2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2. 중남미 지역과의 경제 및 에너지 · 자원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및 중남미 자원 · 인프라 · 신산업 협력센터 운영

3. (생략)

4. 미주개발은행, 중남미개발은행, 태평양동맹 및 유엔중남미 카리브경제위원회 등 지역경제협력체와의 협력방안 연구 및 시행

5.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협력 포럼과의 협력방안 수립 및 시행

6.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협력 포럼 사이버사무국의 운영

<신설>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 · 연구 및 협력방안 연구 · 시행

4. -----

----- 라틴아메리카 -----

5. (현행 제3호와 같음)

<삭제>

<삭제>

6. 미주개발은행, 중남미개발은행, 유엔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 등 지역경제기구 및 태평양동맹, 안데스공동체 등 지역경제협력체와의 협력방안 연구 및 시행

7.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협력 포럼과의 협력방안 수립 · 시행 및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 사이버사무국의 운영

제24조(공공문화외교국) ① (생략)

② 공공문화외교국에 공공외교총괄과·유네스코과·문화교류협력과·정책공공외교과·지역공공외교과를 둔다.

③ 공공외교총괄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유네스코과장·문화교류협력과장·정책공공외교과장 및 지역공공외교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④ 공공외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지식 분야 공공외교 및 국제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의2. ~ 4. (생략)

5. 국외 한국학 및 한국어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6. ~ 7. (생략)

⑤ 유네스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략)

제24조(공공문화외교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공외교총괄과·유네스코과·문화교류협력과·정책공공외교1과·정책공공외교2과-----.

③ -----

----- 유네스코과장·문화교류협력과장·정책공공외교1과장 및 정책공공외교2과장-----

-----.

④ -----.

1. 문화 -----

1의2. ~ 4. (현행과 같음)

<삭제>

6. ~ 7. (현행과 같음)

⑤ -----.

1.·2. (현행과 같음)

3. 재외공관의 문화외교활동에
대한 관리·지원 및 평가

3의2. 국외 문화관계 자료의 수
집·연구

4.·5. (생략)

6. 문화외교 분야 인적교류 사
업에 관한 업무

7.·8. 삭제

9. 문화외교 활동과 관련된 대
외 홍보 업무

10.·11.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⑥ (생략)

⑦ 정책공공외교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
에 대한 공공외교(이하 “정책
공공외교”라 한다)의 연간 및
중장기 정책 수립 및 총괄·
조정

<삭제>

<삭제>

4.·5.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10.·11. (현행과 같음)

12. 지식 분야 공공외교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
괄·조정

13. 국외한국학 및 한국어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14. 국외 문화재 환수·활용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

⑥ (현행과 같음)

⑦ 정책공공외교1과장-----
-----.

1. -----

----- 한다) 콘텐츠 발굴
및 관련업무 -----
--

2. <u>정책공공외교 관련 중앙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업무협조 및 조정</u> 3. <u>정책공공외교 수행을 위한 연구·조사 및 전문가와의 협력</u> 4. <u>정책공공외교 수행을 위한 정책콘텐츠 개발 및 지원</u> 5. <u>아시아·아프리카중동·중남미 지역 대상 정책공공외교 수행체계 구축 및 계획 수립</u> 6. <u>아시아·아프리카중동·중남미 지역 대상 정책공공외교 사업 이행 및 조정</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⑧ <u>지역공공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공공외교 콘텐츠 발굴 및 업무 총괄·조정</u>	2. <u>디지털 공공외교 이행 및 관련업무 총괄·조정</u> <u><삭 제></u> <u><삭 제></u> 3. <u>미주·유럽·러시아</u> ----- -- 4. <u>미주·유럽·러시아</u> ----- -- 5. <u>정책공공외교 사업 관련 재외공관 지원, 관리 및 평가</u> 6. <u>주한 외국인 대상 공공외교 사업 발굴 및 시행</u> 7. <u>국민외교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u> 8. <u>국민외교센터 운영 등 국민외교 기반 구축에 관한 업무</u> ⑧ <u>정책공공외교2과장</u>----- -----. 1. <u>정책공공외교의 연간 및 중장기 정책 수립 및 총괄·조</u>
--	--

<u>2. 디지털 외교 전략 수립 및 이행</u> <u><신 설></u> <u><신 설></u> 3. <u>북미·유럽 지역 대상 정책 공공외교 수행체계 구축 및 계획 수립</u> 4. <u>북미·유럽 지역 대상 정책 공공외교 사업 이행 및 조정</u> 5. <u>정책공공외교 사업 관련 재외공관 지원, 관리 및 평가</u> 6. <u>주한 외국인 대상 공공외교 사업 발굴 및 시행</u> 7. <u>국민외교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u> 8. <u>국민외교센터 운영 등 국민외교 기반 구축에 관한 업무</u> 제28조(기후환경과학외교국) ① (생략) ② <u>기후환경과학외교국에 국제</u>	<u>정</u> 2. <u>정책공공외교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업무협조 및 조정</u> 3. <u>정책공공외교 수행을 위한 연구·조사 및 전문가와의 협력</u> 4. <u>정책공공외교 수행을 위한 정책공공외교 콘텐츠 개발 및 지원</u> 5. <u>아시아·아프리카중동</u> ---- -- 6. <u>아시아·아프리카중동</u> ---- --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제28조(기후환경과학외교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u>에너지</u>
---	--

에너지안보과 · 기후녹색협력과
및 글로벌환경과학과를 둔다.

③ 국제에너지안보과장 및 글로벌환경과학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하고, 기후녹색협력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부이사관 ·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한다.

④ 국제에너지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신설>

1의3. 삭제

2. ~ 10. (생략)

⑤ 기후녹색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9. 녹색경제 · 지속가능발전 관련 양자협력 업무

과학외교과 · 기후변화외교과
및 녹색환경외교과-----.

③ 에너지과학외교과장 및 녹색환경외교과장-----

----- 기후변화외교과장-----

-----.

④ 에너지과학외교과장-----
-----.

1. (현행과 같음)

1의2. 과학기술 · 우주 및 정보통신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 · 시행 및 종합 · 조정

2. ~ 10. (현행과 같음)

⑤ 기후변화외교과장-----
-----.

1. ~ 8. (현행과 같음)

<삭제>

10. ~ 12. (생략)

⑥ 글로벌환경과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13. 과학기술·우주 및 정보통신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신설>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

제3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기후변화대사, 부대변인, 외교전략기획관, 감사관, 국립외교원의 교수부장 및 연구부장 2명을 말한다.

②·③ (생략)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정책홍보담당관, 국제법규과장, 문화교류협력과장, 지역경

10. ~ 12. (현행과 같음)

⑥ 녹색환경외교과장-----
-----.

1. ~ 12. (현행과 같음)

<삭제>

14. 녹색경제·지속가능발전 관련 양자협력 업무

15. ----- 제14호-----

제3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

----- 감사관-----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제기구과장, 양자경제외교총괄 과장, <u>글로벌환경과학과장</u> 및 국립외교원 외국어교육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 다.	----- --- <u>녹색환경외교과장, 전략조</u> <u>정담당관</u> ----- ----- --.
--	--